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외동포정책 정보제공 방식의 제도화〉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44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재외동포정책 정보제공 방식의 제도화 ..... | 2  |
| 2. 부칙(시행일) .....             | 11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년 1월 27일
3. 회부일자 : 2026년 1월 28일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 거주국 정착 지원, 민족 정체성 함양, 대한민국과의 교류·유대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지역과 세대·연령 등에 따라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이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정책·사업의 내용을 적시에 파악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 내용을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으로 안내·정보제공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7조).

### Ⅲ. 검토의견

#### 1. 재외동포정책 정보제공 방식의 제도화

개정안은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br>-----.        |
| 1.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1. ~ 4. (현행과 같음)         |
| 2. 재외동포정책의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                          |
|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
| 4. 그 밖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 설&gt;</u></p> <p>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p> <p>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u>5.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u></p> <p>부 칙</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가. 재외동포청 의견

재외동포청은 동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며, 다양한 재외동포정책을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힘.

다만, 재외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다국어 안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함.

재외동포청은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의 온라인 및 다국어 홍보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소요 예산은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39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동 추정액은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 구축’ 사업의 2026년도 감액된 예산을 원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다국어 정보제공을 위한 별도의 운영비를 포함한 범위로 산정된 것임.

#### < 온라인 및 다국어 홍보를 위한 소요 예산 추정액 >

| 구분       | 세부내역                                                                                                                                                                                    | 산출내역                                                        |
|----------|-----------------------------------------------------------------------------------------------------------------------------------------------------------------------------------------|-------------------------------------------------------------|
| 최소<br>금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통 플랫폼<br/>: 2,016백만원(‘26년 감액분)+334백만원(‘26년 예산)</li> <li>○ 누리소통망<br/>: 586백만원(‘26년 예산)+80백만원(영문 누리소통망* 별도 운영비)</li> </ul>                      | [2,016백만 원+334백만원]<br>+[586백만원+80백만원]<br>= 3,016백만 원        |
| 최대<br>금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통 플랫폼<br/>: 2,016백만원(‘26년 감액분)+334백만원(‘26년 예산)+650백만원(사업 고도화 비용)</li> <li>○ 누리소통망<br/>: 586백만원(‘26년 예산)+320백만원(다국어 누리소통망** 별도 운영비)</li> </ul> | [2,016백만원+334백만원+650백만원]<br>+[586백만원+320백만원]<br>= 3,906백만 원 |

※자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재외동포정책과(2026.02.11.)

## 나. 검토의견

### 1) 현행 체계

현재 재외동포청은 온라인 및 다국어 홍보를 위하여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튜브(동포ON),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4개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의 주요 사업 및 정책을 홍보하고 있음.

특히 기존 유튜브 채널을 개편하여 ‘동포ON’ 채널을 운영하면서 24시간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해당 콘텐츠에는 자막(CC)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다국어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누리소통망(SNS) 전반에 대하여 별도의 다국어 홍보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다국어 홍보를 위한 예산 또한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누리소통망 운영 예산(5억 8,600만원)과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동포ON) 운영 예산(3억 3,400만원) 등 총 9억 2,000만원의 홍보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2026년도 재외동포청 홍보 관련 예산 현황 >

| 구분                    | 산출내역                                   | 전년 대비 가감     |
|-----------------------|----------------------------------------|--------------|
| 누리소통망<br>(SNS)        | ○ 48.8백만 원×12개월=586백만 원                | 191백만 원 감액   |
|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br>(동포ON) | ○ 재외동포 관련 신규 콘텐츠 제작<br>및 운영 1식 334백만 원 | 2,016백만 원 감액 |

※자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재외동포정책과(2026.02.11.)

또한,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에는 「재외동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소관 법령 8건에 대하여 다국어 번역본을 제공하는 외국어 법령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 재외동포청 외국어법령 서비스 현황 >

| 구분                                              | 번역본                |
|-------------------------------------------------|--------------------|
| 「재외동포기본법」 및 시행령                                 |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br>및 시행령                     |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br>지원을 위한 특별법」<br>및 시행령 |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br>업무처리 지침」                 | 러시아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
|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 러시아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

※ 재외동포청 홈페이지([https://www.oka.go.kr/web/board/brdList.do?menu\\_cd=000164](https://www.oka.go.kr/web/board/brdList.do?menu_cd=000164)) (2026.02.26. 기준)

이와 같이 일부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다국어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외동포의 거주 지역 및 세대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온라인 기반 정보제공과 다국어 안내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임.

## 2) 검토의견

현행 「재외동포기본법」 제7조는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포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책 정보의 전달 방식이나 정보 접근성 제고와 관련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정보제공의 방식과 방향을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정보 전달의 접근성과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재외동포의 정책 참여 확대 및 정책 활용도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입법 취지 자체는 재외동포 정책 환경의 변화와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통상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추진 전략 등 포괄적·추상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sup>1)</sup>이며, 정책의 구체적인 집행 수단이나 정보제공 방식까지를 법률로 명시하는 것은 기본계획 제도의 성격과 반드시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현행 「재외동포기본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본계획의 포함사항은 정책의 목표, 추진 방향, 주요 과제 등 정책 체계의 골격을 이루는 요소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안에

---

1)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개정증보판)』, 2024, pp.266~269.

서 추가하려는 사항은 그 성격상 집행 수단 또는 정책 운영 방식에 가까운 측면이 있음. 이러한 점에서 해당 사항을 법률상 기본계획의 구성 요소로 직접 열거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외동포 대상 정책의 다국어 안내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기보다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와 같이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국가의 책무 또는 노력 의무로 규정하는 입법 방식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참고 입법례: 다국어 서비스 지원 관련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의2.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⑥ (생략)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온라인 및 다국어 정보제공의 제도적 확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재정 소요(30~39억원, 재외동포청 추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 범위 및 추진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 부칙(시행일)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안 부칙).

| 개 정 안              |
|--------------------|
| 부 칙                |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은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내용에 일정한 변경을 수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이 법률 개정을 통하여 기본계획에 새로운 포함사항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개정사항을 어느 시점에 수립되는 기본계획부터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적용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이 수용될 경우에는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례를 두는 것이 적절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263